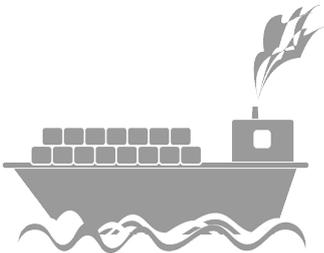


시장경제원리 이야기

공병호 지음



훔 어 보 기

시장경제원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농어촌 부채탕감을 주장한다. 때로는 교육이 시장원리로부터 예외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GNP대비 6%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걸음 나아가 국민의 이름으로 부실화된 기업을 구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말로는 시장원리를 외치는 사람들도 정치논리와 사회논리에 휩쓸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가 아니고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라 하겠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과 의견 및 태도 등을 가르키는 용어이다. 흔히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체제 혹은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때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의 주요한 측면인 하드웨어 부분만을 가르킨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하드웨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경제는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생활철학 등과 관계없이 능률만을 추구하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경제적 방법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분업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태도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시장경제를 시장경제체제와 같은 물리적인 부분 즉, 하드웨어 부분과 이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부분, 즉 소프트웨어 부분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물리적인 부분은 사적 재산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부분은 일종의 새로운 도덕률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란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인간들이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해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는 인간이라는 종이 많은 수의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 외에 수많은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것이 있을까?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생존과 보다 나

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하겠다. 수렵채집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해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굳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서로 얼굴을 아는 소규모 그룹에 적합했던 나누어 먹기식 원리나 지배원리 dominance principle로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익명의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거대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나누어 먹기식 원리나 지배원리를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법과 제도 혹은 관행과 관습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판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이 자유인들 사이에 분업과 전문화를 촉진하느냐 아니면 억제하느냐를 따져보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의 여덟 가지 원리원칙에 걸맞는 법과 제도 혹은 관행과 관습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어떤 정책이 선의善意와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여덟 가지 원칙들과 충돌한다면 이는 반反시장경제원리로 보면 된다.

첫째, 교환자유 원리 시장경제원리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 국민여론, 혹은 물가안정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가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인 교환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둘째, 사적 재산권 원리 사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에 따라 한 사회는 부의 감소와 성장의 정지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사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은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재산권의 보호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보호는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기업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기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경제원리는 현존하는 기업들과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는 기업을 계약체로 인정하며 계약체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인정한다. 기업을 위해 계약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넷째, 경쟁의 원리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경쟁은 선이다. 아무튼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경쟁과정

을 거치지 않고 사전적으로 무엇인가 최적형태를 결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과정 대신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열정이나 신념을 버려야 한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원리란 모든 것을 경쟁과정에 맡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경쟁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양한 법제 등을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인센티브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행동이 어떤 원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보통의 인간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센티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사회가 보다 번영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선택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여섯째, 자기책임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개인적 책임의 원리를 말한다. 개인적 책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을 뜻한다. 책임이라는 중압감을 가질 때만이 사람들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그에 따른 책임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건 대개의 정치가들이나 관료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개인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변모시키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책임의 원리 대신에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작은 정부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거대정부와는 공존할 수 없다.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늘어난다. 이런 경우 시장경제원리 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달라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정부가 커진다는 사실은 정부가 좌우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 외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영향력 증대는 경제와 정치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 경제활동에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혼재되어 사용됨을 뜻한다.

여덟째, 법치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법의 지배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私法의 원리를 어긴 공법들이 행정부의 주도하에 양산되고 있다. 간혹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통해서 위헌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 주도의 입법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보다는 입법부를 통과한 '입법의 지배' 원칙이 유행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의 지배와 시장경제원리는 양립할 수 없다. 사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입법은 결국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제를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특별법이나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입법들 대다수는 입법의 지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들은 시장경제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시장경제원리는 법의 지

배를 뒷받침하는 법제와 공존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만큼 원래의 의미와 동떨어져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용되는 것도 드물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악의를 갖고 편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추측하건대 시장경제원리라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한 나라의 성장과 번영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고 정부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지속적으로 번영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 한국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단기간의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원리에 걸맞는 법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한국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의 크기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시장경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새로운 도덕률을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1. 시작하는 말: 총론 찬성 · 각론 반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유행이란 것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시장경제 혹은 시장경제원리 (혹은 시장원리나 경제논리)라는 말이 있다. 첨예하게 이익이 충돌하는 정치.경제.사회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용어는 더욱더 그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바람을 반영이라도 하듯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여론의 흐름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두들 틈만 나면 이 땅에 시장경제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특정 사회 현안이 시장경제원리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언젠가 ‘법대로’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듯이, 이제는 ‘시장경제원리대로’라는 용어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마도 이 같은 유행은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시장경제원리를 소리높여 외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면 과연 그들이 이 같은 용어의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총론으로는 ‘시장경제원리대로 해야’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그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시장원리는 그야말로 ‘총론 찬성.각론 반대’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시장원리 (혹은 경제논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놓어준 부채탕감을 주장한다. 때때로 교육은 시장원리로부터 예외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GNP대비 6%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걸음 나아가 국민의 이름으로 부실화된 기업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말로는 시장원리를 외치는 사람들도 정치논리와 사회논리에 휩쓸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장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는 시장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가 아니고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라 하겠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영과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첫걸음은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시장경제

시장경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과 의견 및 태도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흔히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체제 혹은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때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의 주요한 측면인 하드웨어 hardware 부분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하드웨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경제는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생활철학 등과 관계없이 능률만을 추구하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경제적 방법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분업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태도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의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는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시장경제를 시장경제체제와 같은 물리적인 부분, 즉 하드웨어 부분과 이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즉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물리적인 부분은 사적 재산권이나 계약자유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대표적인 것들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일종의 새로운 도덕률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 상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속의 철저한 이행, 준법정신, 절차의 중시, 타인의 성공에 대한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질시의 의도적인 자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것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도덕률이라고 부르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지녀왔던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세계를 지배하던 행동규범과는 전혀 다르며 교환과 분업이 출현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선택된 아주 새로운 가치 혹은 도덕률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개개인의 능력이 존중되어야 하고,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개인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이 가진 지식을 천연자원에 결합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혁신과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인간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 (혹은 시장경제)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계획 (혹은 계획경제)에 맡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시장경제는 인간이 가진 지식이 누군가 계획과 조정, 그리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명쾌하게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아니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계획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보다는 계획을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이 구체화된 것이 사회주의와 정부 개입이 대폭 강화된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른바 인간이 가진 지식이 말이나 글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는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이 말이나 글로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혹은 비조직적 지식unorganized knowledge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라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상거래나 사업가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은 그 대부분이 암묵적 지식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능력이야말로 암묵적 지식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경제문제의 해결을 개개인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시장경제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 개개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물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사적 재산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시장경제는 정치권력이 임의로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간섭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는 정치권력이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곳에서 출현하고 꽃을 피울 수 있다.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이루어졌던 영국에서 일찍부터 시장경제가 꽃을 피웠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절대권력을 쥔 왕이 존재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곳에서는 시장경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구상의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옛날처럼 절대권력을 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모습의 현대판 절대권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대중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또 하나의 절대권력을 쥔 사람들이 다수의 힘이다. 다수의 힘은 여론 혹은 국민정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 위에 국민정서가 있고, 국민정서 위에 억지 (혹은 떼)가 있다는 우리 사회의 우스개 이야기처럼 이제 여론과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라는 문

제가 등장하게 된다.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여론은 과거의 절대권력과 엇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론의 힘이 개개인의 삶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속에서 시장경제는 변창할 수 없다. 정치권력과 국민정서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시장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생적 질서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원리 (혹은 시장원리 혹은 경제논리)는 과연 일찍부터 시장경제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서구 선진국들에게만 고유한 것일까? 선명한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 이 나라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반론은 “당신 이야기가 원론적으로는 옳은지 모르지만 선진국과 우리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무분별하게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야 한다”이다.

‘한국적 시장경제’가 가능한 것일까? 시장경제원리란 과연 서구로부터 들어온 수입품일까? 만약에 수입품이라면 ‘한국적 시장경제원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속성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인간도 생물학자들의 눈에는 한갓 하나의 종種에 불과하다. 현대인의 조상인 현생인류도 길고 긴 지구 역사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살아 온 사람일 뿐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은 생존과 종의 번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신하면서 살아간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동식물들은 이 같은 생존을 향한 길고 긴 여행길에서 적응에 성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목표는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선 살아남고 한 걸음 나아가 좀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은 ‘생물이 그들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욕망’이라고 믿었다. 배고픔을 벗어나려는 욕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욕망, 그리고 특히 강한 성적 욕망을 들고 있다.

에라스무스 다윈의 직관력은 훗날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체계화되었는데, 그는 『종

의 기원』에서 “인류는 오랫동안 거대한 규모의 실험을 계속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거대한 규모의 실험에서 승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은 적응을 통해서 다른 개체보다 배고픔과 자손 퍼뜨리기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갖춘 자들이다. 칼 세이건 Carl Sagan 부처는 진화와 생존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연은 스스로 다른 종보다 뛰어난 적응력을 나타내는 동식물을 선택해 왔다. 이처럼 운 좋은 생물은 우선적으로 재생산되어 많은 자손을 후세에 남기고,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경쟁상대를 대체하게 된다. ……

많은 개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연환경의 능력, 이른바 ‘부양능력’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생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두를 살릴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을 둘러싸고 냉혹한 생존경쟁이 벌어진다. 생물의 ‘생생과 사死’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자연선택은 거대한 ‘체’이다. 압도적 다수 중에서 선두에 서는 극소수만이 그 체를 통과해서 그 유전적 형질을 다음 세대에 남기도록 허락받는다. 자손들의 유전자 구성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선택은 그 어떤 냉정하고 고집스러운 인간 사육가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냉혹하고 무자비하다. ……

훌륭하게 적응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지상의 다양한 생물들이 모두 자연의 냉혹한 ‘체질’이라는 선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자연선택이 생물을 자연환경에 적응시켜가는 유일한 과정이라는 점뿐이다.”

시장경제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식물의 적자생존, 진화, 자연선택 등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란 역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동식물의 진화와 다른 점은 앞의 것은 ‘생물학적 진화’인데 반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낳게 된 진화는 ‘문화적 진화’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세기만 하더라도 시장경제원리와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자급자족이나 중앙명령경제를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물론 그들의 실패는 경제문제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미 실패할 것임이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생물학적 진화는 동식물의 유리한 유전적 특성이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문화적 진화는 경쟁적인 제도, 전통, 관행, 관습, 세계관, 그밖에 행동 규칙들이 발견되어지고 이들이 다른 집단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모방·학습되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원리가 지배적인 방법으로 확산되는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것에 비해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민경국 교수는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선별되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에서는 유전적인 조합들 및 이로 인한 유전적인 행동규칙들인 반면에 문화적 진화에서는 사회질서를 위한 비유전적, 비본능적인 행동규칙들이다. 생물학적 진화에서 도태는 유기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적 진화에서 도태는 행동규칙이나 문화적 요소들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들이 개체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따라서 문화적 진화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적응의 문제이다.”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들에게 살아간다는 사실은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언제나 희소한 자원 때문에 같은 종 내에서 혹은 다른 종들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에게 있어서도 삶은 희소한 자원을 누가 많이 먼저 취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제란 생존 문제일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보금자리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동식물들은 생물학적 진화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화학적이고 유전적인 기질이나 감정 등을 선택한다. 특히 인간은 문제해결에 적합한 제도나 행동규칙 등을 문화적 진화를 통해서 얻게 된다.

시장경제원리란 문제해결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인간들이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해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는 인간이라는 종이 많은 수의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 외에 수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것이 있을까?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하겠다. 수렵채집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해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굳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서로 서로 얼굴을 아는 소규모 그룹에 적합했던 나누어 먹기식 원리나 지배원리 dominance principle로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익명의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거대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나누어 먹기식 원리나 지배원리를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먹고 사는 문제, 한 걸음 나아가 좀더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원리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현재의 인구수를 수백만분의 일로 줄여서 멀고 먼 옛날처럼 구성원들의 삶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방법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에 우리가 현재와 같이 수백 수천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장경제원리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이 점에 우리 모두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민경국 교수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원시부족 사회에서 거대한 사회로의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생겨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장경제질서 진화이다. 시장경제질서는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대한 사회 내지 열린 사회의 전제조건이다. 어떠한 구체적인 공동의 목적이 없이도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계기는 교환과 상업의 도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질서자유주의 창시자 중 한 석학인 뵘은 시장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간주하고 있다. ……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질서를 ‘공동체에 누구든 수용한다’, 또는 ‘적을 친구로 만든다’라는 의미인 ‘카탈락시’라고 부르고 있다. 적을 친구로 만들고, 원하면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듦으로써 ‘확장된 질서’가 가능하다.

확장된 질서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화공동체들이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질서는 확장된 질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시장질서가 없었다면 인류는 범세계적으로까지 확장된 질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 확장된 질서로 인하여 우리는 개별정신이나 집단이 알 수 있는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

4. 시장경제원리의 여덟 가지 원칙

시장경제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이미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원리는 분업과 교환을 통해서 부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를 생각할 때 어떤 원리 원칙이 구비된다면 분업과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곰곰이 따져보면 된다.

분업과 교환은 왜 중요한가? 일찍이 아담 스미스가 그의 대작 『국부론』에서 갈파한 바와 같이 한 나라 경제생산력의 중요한 원천은 노동의 분업 또는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스미스의 확신대로 사람들이 경제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들은 전문화를 통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맡아 분업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분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문화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화와 더불어 교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와 관행 관습 등이 만들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리프만Lippman의 이야기대로 인간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운이 자신의 행운을 증대시켜 주는 부흥의 생산방식’을 갖게 된다.

“분업에 의해 인간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협력에 의존하게 될 때까지, 현실세계의 정책이란 약탈 그것이었다. 정신에 대한 추구는 초현실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바뀌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회의 건설 가능성을 찾아 볼 전망이 트인 것은 비로소 산업혁명기에 이르러서이다. 드디어 현세와 정신, 이기와 공평무사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그때까지의 틈이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특정 법과 제도 혹은 관행과 관습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판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이 자유인들 사이에 분업과 전문화를 촉진하느냐 아니면 억제하느냐를 따져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의 여덟 가지 원리원칙에 걸맞은 법과 제도 혹은 관행과 관습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어떤 정책이 선의善意와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여덟 가지 원칙들과 충돌한다면 이는 어김없이 반反시장경제원리로 보면 된다. 그래서 필자는 아래의 여덟 가지 원칙들을 시장경제원리를 구성하는 일종의 황금률이라 부르겠다.

첫째, 교환 자유의 원리

자발적인 교환은 부를 만들어내고 교환에 참가한 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물론 여기서 교환은 다른 사람이나 정부의 강제.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제적인 교환을 뜻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분업과 교환의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한 인간에 의한 노동의 결과로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의 매우 작은 부분뿐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에 의한 산출물 중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잉여산출물을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한 산출물과 교환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의 훨씬 더 큰 부분을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교환하며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상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 전체는 적절하게 상업사회로 발전한다.”

정부는 흔히 경제정의나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발적인 교환을 억제하는 입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한 사

회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생산해 낼 수 있는 부의 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 국민여론, 혹은 물가안정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가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인 교환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자발적인 교환행위를 억제하는 사례처럼 반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흔하다. 우선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분야를 시작하기를 원할 때 관료나 정치가들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막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컬어 진입장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진입을 막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특정 사업에 신규로 허가를 내주기에는 너무 많은 공급자들이 생겨나 공급과잉이 발생한다는 것이 흔한 이유이다. 때로는 공급자들 사이의 너무 격한 경쟁이 '제 살 깎기 경쟁'이라는 것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아무튼 어떤 명분으로도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그럴 듯한 명분 뒤에는 교환을 제한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는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교환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때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 포괄적인 권한을 시행령이나 내규와 같이 하위 법령들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입법은 입법부에서 통과하지만 그밖에 하위법령들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은 주로 행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행령과 내규에서도 모호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조항들을 심심찮게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은 필요 이상의 재량권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환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발적인 교환을 제약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명분을 내세우는 가격규제를 들 수 있다. 만일에 규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정해지면, 수요자는 원래보다 작은 양의 상품을 높은 가격에서 구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면 생산자는 원래보다 작은 양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서 생산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가격규제는 자발적인 교환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대 생산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사적 재산권의 원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운으로 얻은 결과물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처분·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적 재산권이라고 한다. 사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에 따라 한 사회는 부의 감소와 성장의 정지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사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은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재산권의 보호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보호는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종 프로야구선수의 해외 진출이 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과열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같은 업종 내에 있는 회사원의 스카웃을 막는 협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스카웃을 당하는 쪽이나 스카웃을 행하는 쪽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 사적 재산권이라는 점이다. 구단과 개인 사이에 혹은 동종 업계의 기업들 사이에 맺어진 스카웃 방지 협약은 사적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과열경쟁을 방지해서 구단의 보호육성을 도모해야 한다든지 혹은 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등과 같은 명분은 모두 사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상위의 원칙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사적 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을 가진 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 침해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지나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에서는 공권력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양산해 내고 있다. 물론 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이나 시장질서의 안정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많은 수의 기금이나 부담금을 다양한 명분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돈을 빼앗아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때로는 농어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름은 사립학교이지만 직·간접으로 행정부의 간섭에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들이다.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우선 사적 재산권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의 것일 때만이 사람들은 알뜰살뜰 챙기고 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공유의 비극 The Tragedy of Commons’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바 있다. 집, 토지, 건물, 천연자원 등 어느 것을 가리지 않고 공동 재산권이 설정될 때 모두가 그 재산을 약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포켓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면 낭비해 버리는 습성을 타고 났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적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은 정부가 거두어들인 돈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도 결국 사적 재산권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결국 행정부의 것을 뜻한다. 필자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같은 구호를 애당초 믿지 않지만 정부가 은행산업의 진정한 민영화를 실시하지 않는 어떤 명분도 사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대명제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사적 재산권의 보호는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더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적 재산권의 소유자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적 재산권의 소유자는 익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노력은 결국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사적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는 비효율성과 낭비가 있을 뿐이다. 왜 거대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야 하는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적 재산권은 소유자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낭비보다는 저축을 하도록 유도한다. 사적 재산권이 확립되지 않는 경우에 그 소유자의 행동반경은 오로지 현재와 자신뿐이다. 그러나 사적 재산권은 소유자에게 세대를 넘어서 영속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시장경제란 결국 자본축적과 시장의 확대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사적 재산권이 없다면 자본축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실명제나 자금세탁방지법, 턱없이 높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반시장경제원리에 가까운 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셋째, 자유기업의 원리

부를 만들어 내는 원천으로 우리는 흔히 잘 훈련받은 근로자, 자본축적, 기술진보, 그리고 잘 짜인 경제조직을 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등장한 기업 혹은 회사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우수한 노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가 entrepreneur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로 꿰지 못한다면, 그 어느 생산요소도 부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은 기업가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란 존재는 소비자들의 바램을 사업기회의 하나로 포착하고 이를 사업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이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나 자본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생산요소를 결합시켜 하나의 목적인 이윤추구를 향해 노력하게 만든다. 이때 기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형태나 내용이 다른 계약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업은 '계약의 총합체 a nexus of contracts'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는 기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경제원리는 현존하는 기업들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는 기업을 계약체로 인정하며 계약체 사이에 계약자유 원칙이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인정한다. 기업을 위해 계약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이 계약자유 원칙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법이 등장할 당시처럼 생산자들이 독점력을 유지하는 경우를 현대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시장이 개방되고 생산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계약의 주체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법률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 근로자와 기업가 사이에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원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단체이다. 기업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약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명분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대기업 경제력집중의 억제, 레저 유통산업의 억제, 업종전문화의 촉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의 명분을 내세워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이 아니며,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차별적인 입법을 통해서 기업활동에 간여하는 정부의 모든 조치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정부가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목표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강제력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돈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은 없다. 번덕스러운 소비자들의 기호를 두고 경쟁하여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어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다. 물론 시장보호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

제는 소비자들이 언제라도 지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달리 경제력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다.

요컨대 기업을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특정 기업은 우리 기업이니까 혹은 특정 기업은 국민의 기업이니까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 기업이 만들어 낸 부는 사회에 받쳐야 한다는 것 등 다양한 대중경제지식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나 국민 정서가 가져오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역시 시장경제원리에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기업들을 차별하지 말고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마음껏 부를 추구하게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쟁의 원리

경쟁은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혈액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아주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경쟁은 선이다. 흔히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경쟁에도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적optimal경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최적경쟁이 존재한다면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최적개수만큼 있어야 한다. 최적수를 넘어서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가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과당경쟁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더욱이 최적경쟁이나 최적기업수와 같은 용어는 애당초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는 철저한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경쟁의 원리는 이미 특정 산업에 진출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새롭게 신규 사업을 전개하려는 의사를 가진 잠재적 경쟁자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필수적인가? 우선 시장경제에서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을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을 전개하는 것이 때로는 과열되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불필요할 만큼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과정에서 참가하기 이전에 원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혹은 현존하는 제품보다 더

나은 질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야말로 경쟁은 신제품, 신생산방식 등을 발견해 내는 '발견적 절차discovery procedure'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쟁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의 경쟁기업들에게 느끼는 경쟁심보다 오랫동안 국내에서 함께 성장해 온 라이벌 기업들 사이에 전개되는 눈에 보이는 경쟁의 순효과는 매우 크다. 과열된 경쟁 때문에 낭비되는 것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경쟁의 자원 절감 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쟁은 경쟁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자신이 만들어 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경쟁이 없다면 어느 생산자도 소비자를 깎듯이 모시지 않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쟁이 존재하는 한 생산자들 혹은 경영자들의 전횡은 아주 단기를 제외하면 있을 수 없다.

경쟁은 인간들의 영혼을 깨이게 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경제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란 단순히 물리적인 자원의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가장 강력한 동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정신적인 힘, 다시 말하면 기업가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가정신이란 반드시 기업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정신이란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것을 뜻한다. 기업가정신은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 팽팽한 경쟁압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인간들이 가진 창조하는 힘과 개선하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체제처럼 일종의 정치사회적인 체제로만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는 그 속에 경쟁을 포함함으로써 경쟁이 없었다면 묻혀서 사라지고 말았을 인간의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열정을 깨우는 힘을 갖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규제완화가 세계사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제의 악영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흔히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 비용은 대개가 과소평가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하는 힘과 개선하는 힘 같은 정신적인 힘이 규율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된다면 그것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도 사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경쟁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적으로 무엇인가 최적형태를 결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과정 대신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열정이나 신념을 버려야 한다. 과학적인 지식 면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이 같은 치명적 자만이 가져오는 사회적 피해를 유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원리란 모든 것을 경쟁과정에 맡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경쟁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양한 법제 등을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센티브의 원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인(incentive)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행동이 어떤 원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의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인센티브에 초연한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랜 실험 끝에 알게 되었다. 어쨌든 아무리 보통의 인간에게 사명감과 같은 구호나 당위의 인간론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센티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 70년대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아직도 좌파지식인들의 추앙을 받는 이영희 씨가 최근에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북한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참상은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북한 국가경제의 기본이념인 이른바 자력갱생.자급자족 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60~70년대만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었지만 80년대 이후 세계가 총체적으로 시장화되는 속에서는 존속되기 어려운 원리인 것입니다. 게다가 농민 개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부족했습니다. 난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착각이라고 봅니다.

요새 인간복제라는 말이 유행인데 나는 인간의 유전자에 인위적인 작용을 가해서 현재의 인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간상을 만드는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인간이란 이기심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는 동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양철학에

서 손자나 목자나 공자가 얘기하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또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윤리적인 가치판단을 떠나서 나는 인간의 이기심이 불행하게도 생명을 유지하고 종과 개체를 유지하는 기본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기주의는 이기심이 발동해서 물질 소유의 극대화를 획득한 후에야 그 발동과정 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세계 구성원인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적으로 발동시켜서, 사회주의적인 공평, 평등, 나눔의 도덕적인 방식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물질적 성장과 경제적 부를 생산했던 말이에요. 물론 그 이기심의 충족에 목표를 둔 까닭에 인간의 타락과 사회의 부정, 부패, 범죄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랐고, 이것 또한 자본주의의 영원한 본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법률이니 교육이니 종교니 가족이니 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기심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체제적 조화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인간의 이기심이 전체적인 공동의 이익분배를 자동적으로 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즉 구조결정론적인 입장에서 문화적 혁명, 사회적 교화, 경제적 조화를 통해서 이기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불가능성을 가능한 것으로 믿은 것이 사회주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식량문제도 농민 개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유인誘引의 원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대가로 얻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이 같은 선택을 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으로부터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그에게서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많은 비용이 들 때 흔히 사람들은 당위의 인간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인간은 당연히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기 쉽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의 인간론은 필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오히려 당위의 인간상에 기반을 둔 각종 사회경제정책들이 빚어내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실의 인간은 철저하게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댐건설의 잠재적 비용인 환경파괴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수도 생산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당위의 인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흔히 ‘물을 아껴쓰시다’ 등과 같은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캠페인은 십중팔구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이때 제대로 된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유인의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보통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가격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물은 생필수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산원가의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국가가 재정자금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싼 가격에서 물을 아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소비자에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물의 소비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의 원리를 쓰레기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포켓에서 나가는 돈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허용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적응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센티브가 보통 사람들의 행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 근로소득세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진 자에게 빼앗아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누진세가 가져오는 폐해 때문이다. 특히 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비용이 한둘이 아니다. 한계세율이 높아지자 더욱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적게 일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일을 적게 하는 경향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축적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인센티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의 상승 및 하락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관습 등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사회의 법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것에 비해서 적게 일하고 적게 저축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은 이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센티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사회가 보다 번영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선택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뷰캐넌Buchanan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미국 정치가들은 일본 사람들이 흥청망청 소비하는데 전념해도 좋고, 또 긴장을 풀고 좀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스꽝스러운 제안을 한다. ……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견해는 저축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주로 정부정책이 개인의 저축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제도적으로 그러한 저축행동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리적으로 얘기해서 만일 정부정책이 경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총계적 저축은 증가할 것이다. ……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저축행동을 방해하는 조세제도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연구자에 따르면, 미국에는 저축과 자본형성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제도적 조치가 지배하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자기 책임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개인적 책임의 원리를 말한다. 개인적 책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을 뜻한다. 책임이라는 중압감을 가질 때만이 사람들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책임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개인적 책임의 원리는 철저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회는 개개인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사회이고, 을이라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면 어느 사회가 더욱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될까? 서로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소규모 사회에서는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규모 사회에서는 서로가 타인을 속이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한결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규모 사회처럼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할 수 없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도덕moral으로 공동책임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보지 않는 도처에서 사기나 기만, 그리고 속임수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존과 번영이라는 기준을 갖고 거대 사회의 도덕을 평가하면 당연히 개인적 책임의 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개인적 책임의 원리는 거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도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건 대개의 정치가들이나 관료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개인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변모시키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책임의 원리 대신에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치가들은 흔히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 등과 같은 정책을 지지한다. 여기에다 진보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은 빈번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편다.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나 정책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던지 간에 그 실체는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의 원리는 경제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단순히 넘겨 버릴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공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결국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사회적 책임이란 결국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이해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근사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을 나누어 져야 할 이유는 이해당사자들과 같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모든 사회는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견지할 때만이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다. 여기서 수익자부담의 원리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책임의 원리를 한 사회의 도덕률로써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자기 책임의 원리 대신에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도입한 사회에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상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부모들일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권력에 부담을 나누어 갖자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 같은 이익단체들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부담을 나누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은 비체계적이라서 대개 이익집단들의 활동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무상교육 등과 같은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압력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자신의 이익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하기보다는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회는 점점 이익집단들에 의한 약탈국가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무임승차자free-rider로 행동하게 된다. 십만 원을 소비할 수 있는 곳에서 백만 원을 수요하고, 부담액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사회에 유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원리가 강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는 생산자들이 자연히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요컨대 시장경제원리는 개인적 책임의 원리나 수익자부담의 원리를 뜻한다. 사회적 책임의 원리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의 원리는 그 대부분이 정치논리나 사회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작은 정부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거대 정부와는 공존할 수 없다.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늘어난다. 이런 경우 시장경제원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달라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보통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막연한 신화를 갖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신화를 두고 프랑스의 저명한 자유주의 논객 배스티에Bastiat는 '정부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허구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은 정부는 더 크고, 더 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가 커진다는 사실은 정부가 좌우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 외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영향력 증대는 경제와 정치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 경제활동에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혼재되어 사용됨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정부야말로 시장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말끔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해결사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흔히 믿듯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선한 정부에 대한 막연한 믿음도 버려야 한다.

정부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 정부가 펴는 다양한 정책들이 반드시 성장과 번영을 가져 온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한 나라에서도 정부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법과 제도 혹은 정책이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침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세대의 어느 이익집단이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법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경우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정부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대부분은 악의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의 대다수는 상당한 선의를 갖고 시작된다. 그러나 원래의 선의가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소유권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경우 ‘공유共有의 비극’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많은 낭비와 비효율성은 결국 정부가 가진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정부가 맡는 대신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치안 기능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이 민간기업에게 이양될 수 있고, 교육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민간기업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 나머지 철도, 통신, 전기, 가스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해야 할 분야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을 통해서 제공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정부개입이 강화될 때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비용은 우선 정부가 사용하는 것만큼 민간이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다음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원과 그밖에 정부개입이 없었더라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교환 기회가 축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야기시킨다.

아무튼 시장경제원리는 거대정부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 정부개입은 달리 이야기하면 자원배분이 정치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치원리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자원배분 과정에 도입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환상, 다시 말하면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착각 때문에 정부의 규모는 끊임 없이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헌법 등과 같은 입헌적 조치들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익단체들의 부추김과 정치가나 관료들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과 열정 때문에 계속해서 팽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항상 정치원리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시장경제원리는 작은 정부와 양립할 수 있을 뿐이다.

여덟째, 법치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뜻한다. 법의 지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회의 동의를 얻은 모든 법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우선 법의 지배원리를 나름대로 정의한 바 있는 다이시Dicey의

법의 지배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자.

“법의 지배원칙은 우선 자의적 권력의 영향과 대립되는 의미로서 일반법의 절대적 우위와 최고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자의성, 대권, 나아가 광범위한 재량권의 존재조차도 부정한다. ……

또 법의 지배원칙은 법앞의 평등, 즉 일반법원Ordinary Law Courts에 의해 실현되는 국가의 일반법률에 모든 계층이 공히 평등한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의미의 ‘법의 지배’ 원칙은 일반법원의 관할이나 일반시민에 적용되는 법에의 복종의무로부터 공무원이나 특정인이 면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

마지막으로 ‘법의 지배’ 원칙은 법적 형식의 헌법, 즉 여타의 외국들에서는 본질적으로 헌법전에서 도출되는 법원칙들이 영국에서는 법원source이 아니라 법원the Courts에 의해 실현되고 규정된 개인의 권리의 결과물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공리로써 사용된다. 간단히 말해서 사법private law의 원칙들이 법원이나 의회의 행위에 의해 확장되어 국왕이나 그 신하들의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은 국가의 일반법의 결과물인 것이다.”

우리는 다이시의 ‘법의 지배’원칙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고해서 다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법의 지배’는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법만이 진정한 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법의 일반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하이에크가 내린 법과 입법의 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이에크는 입법부를 통과한 모든 규칙들이 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입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다양한 규칙들이 법이 지녀야 할 원래의 속성인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류의 역사는 법이라는 이름하에 무수히 많은 악행이 저질러져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법이 그 제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공포된 모든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법은 몇 가지의 속성을 지닐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동기를 내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법은 추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법은 어떤 목적이나 동기 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행동만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법은 소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셋째,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어야지 다양한 범주를 기초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법은 일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넷째, 법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금지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이와 같은 특성에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법이 사법私法, 예를 들면 민법이나 형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입법부가 특정 목표를 가지고 특정 집단을 예사롭게 차별하는 법은 하이에크의 의미에서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의 일반원칙인 사적 소유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다양한 차별입법들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는 현대민주주의에서 법 혹은 법의 지배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한 개인의 행동이 개별적인 금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율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을 경우 경제적 자유와 같이 다른 모든 자유들도 보장될 것이다.

권력분립도 원래의 의미에서는 역시 동일한 일반적 원칙의 적용이기는 하지만 이때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을 구분함에 있어서 ‘법’이란 개념이 일반적 행동규율이라는 의미로 좁게 파악될 경우에 한해서만, 권력분립도 역시 동일한 일반적 원칙의 적용이다. 일반적인 원칙을 옹호했던 초기 대변인들도 역시 법을 일반적인 행동규율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파악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입법부가 이러한 좁은 의미의 법만을 제정.공포하는 한, 사법부도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규율에 대한 복종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강제를 판결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도 강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존 로크가 요구하고 있듯이 입법부의 권한이 엄격한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법을 공포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입법부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든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명령을 행정부에 대해 제정.공포하고 또 입법부의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허용된 행정부의 모든 조치들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권력분립은 일반적인 원칙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현대 국가에서처럼 입법부라고 부르는 대의제 의회가 무제한적인 최고 권위자로서, 개별 조치들을 취하도록 행정부의 행동을 조종하고, 따라서 권력분립이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해 공포된 처분들을 수행한다는 것만을 뜻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자유주의 이론의 좁은 의미인 법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더 이상 확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의 원리를 어긴 공법들이 행정부의 주도하에 양산되고 있다. 간혹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통해서 위헌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 주도의 입법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는 원칙보다는 입법부를 통과한 입법의 지배the rule of legislation라는 원칙이 유행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의 지배가 유행하는 사회에서는 입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익집단들이 양산되게 마련이다. 입법의 지배와 시장경제원리는 양립할 수 없다. 사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입법은 결국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제를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특별법이나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입법들 대다수는 입법의 지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들은 시장경제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시장경제원리는 입법의 지배 대신에 법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법제와 공존할 수 있을 뿐이다.

5. 맺는말: 시장원리인가, 정치원리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옛말이 있다. 요사이 책임질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대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만큼 원래의 의미와 동떨어져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용되는 것도 드물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악의를 갖고 편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추측하건대 시장경제원리라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지탱하는 여덟 가지의 원칙들, 즉 교환 자유의 원리, 사적 재산권의 원리, 자유기업의 원리, 경쟁의 원리, 인센티브의 원리, 자기 책임의 원리, 작은 정부의 원리, 법치의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누구든지 어떤 입법이나 제도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선의를 내세우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끊임 없이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십중팔구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평등주의자나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식인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정치가들, 그리고 마음만 따뜻한 보통 사람들

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나 입법을 양산해 내는 일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나 입법은 곧바로 정치논리에 의해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정치논리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거나 다수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자원을 강제적으로 배분해 주는 일이다. 자원배분의 결정자는 개개의 소비자나 생산자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정치가나 관료들이다. 예를 들어, 기금을 만들어서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이익을 보는 집단과 이와 관련된 지식인들에게서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정치가나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실시한다. 그들에게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특정 집단에게 선심을 쓰는 일은 신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의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성장의 정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서 혹은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원리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오랜 실험을 거친 끝에 인간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내는데 최상의 방법으로 발견해 낸 것이 시장경제원리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서서히 한 나라의 성장과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파국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아무튼 한 나라의 성장과 번영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고 정부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지속적으로 번영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 한국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잠시의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원리에 걸맞는 법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한국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의 크기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누구든지 시장경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도덕률을 꼼꼼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란 단순히 경제, 정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활철학의 일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성공과 이 사회의 번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도덕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자신이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라.

둘째,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라.

- 셋째,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라.
- 넷째, 정부에 대한 의존성향을 버려라.
- 다섯째,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느낌이나 감정을 경계하라.
- 여섯째, 시장에 대한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라.
- 일곱째, 법치를 존중하라.
- 여덟째, 집단주의를 통한 폭력의 행사를 자제하라.
- 아홉째,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라.
- 열번째, 경제와 정서를 분리하라.
- 열한번째, 엘리트주의를 버려라.

시장경제원리 이야기

1997년 10월 13일 1판 1쇄 발행

2019년 8월 14일 1판 2쇄 발행

저자_공병호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